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2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최기상・안도걸・김정호

허종식 • 이수진 • 이연희

김우영 • 백승아 • 김동아

임광현 · 정준호 · 정태호

김한규 • 박희승 • 정성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

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가업의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제4항 중 "가업상속재산과"를 "가업상속재산과 비사업용재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가목 중 "5년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 자"라 한다)"를 "7년간 정규직 근로자"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를 "기준 고용인원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를 "7년간 총급여액 의"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 균의 100분의 90에"를 "기준총급여액에"로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가업의 가업상</u>
	속 재산가액이 가업의 비사업
	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 1. ~ 3. (생략)
- ② ③ (생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의 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 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

<u> </u>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가				
<u>업상속재산과 비사업용재산 및</u>				
⑤				

느 가어사소고계르 저요하지

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 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 3.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u>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u> 경우
- 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

-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경우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상속개시일부터 <u>5년간 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 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시	}
	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서	1)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
	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ㅇ]
	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 [©]	1
	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6	
	 에 미달하는 경우	
5.		
가	<u>7</u> 년간 정규	7
	 직 근로자	
		
	기준고용인원여]]
		'1

나	<u>7</u> 년간 총	등급여
<u> 액의</u>		
	<u>기준총급여액에</u>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 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 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